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종목의 명칭

실손의료비보장 계약전환제도 특약

2. 계약전환에 관한 사항

가. 적용대상 및 방법

1) 이 특약은 이미 체결되어 있는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실손의료비 보장계약(이하 ‘전환전계약’ 이라 함)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2017년 4월 1일 이후 판매되는 ‘무배당 새실손의료비보장보험(갱신형)(계약전환용)’ 상품(이하 ‘전환후계약’ 이라 함)으로의 전환을 청약하는 경우에 적용함.

가) 보험료 미납 등으로 인한 실효 상태가 아닌 유효한 계약

나) 전환전계약에서 보상하지 않으나 전환후계약에서 보상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전환일 이전 최대 5년이내에 발생하지 않은 계약

2) ‘1)’의 전환전계약과 전환후계약의 피보험자는 동일함.

3) 전환전계약이라 함은 아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함.

실손의료비 보장이 부가된 유효한 보험계약

단, 보험업감독규정 제7-49조(사업방법서 관련 신고기준)에서 정한 노후실손의료보험은 제외함

4) ‘3)’의 실손의료비 보장이라 함은 아래에서 정한 대상상품에 부가되어 있는 실손의료비 보장을 말함

상품명	판매기간	보장종목
무배당 의료비보장특약(갱신형)	2009년 1월 2일 ~ 2009년 9월 30일	종합보장형 질병보장형
무배당 실손의료비보장특약(갱신형)	2009년 10월 1일 ~ 2009년 11월 30일	종합형 질병형
무배당 실손의료비보장특약(갱신형)	2009년 12월 1일 ~ 2013년 3월 31일	종합입원형 종합통원형 질병입원형 질병통원형 상해입원형 상해통원형

상품명	판매기간	보장종목
무배당 실손의료비보장특약II(갱신형)	2013년 4월 1일 ~ 2014년 3월 31일	질병입원형 질병통원형
무배당 뉴실손의료비보장특약(갱신형)	2014년 4월 1일 ~ 2017년 3월 31일	상해입원형 상해통원형
무배당 알리안츠실손의료비보장보험(갱신형)	2013년 1월 1일 ~ 2014년 3월 31일	질병입원형 질병통원형
무배당 알리안츠뉴실손의료비보장보험(갱신형)	2014년 4월 1일 ~ 2017년 3월 31일	상해입원형 상해통원형

나. 전환후계약의 보장종목 및 보장내용

- 1) 전환후계약의 보장종목은 전환전계약과 동일함. 다만, 전환후계약과 전환전계약의 보장종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아래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환함.

보장종목 (전환전계약)	보장종목 (전환후계약)
종합입원형	상해입원형 질병입원형
종합통원형	상해통원형 질병통원형
종합보장형 또는 종합형	질병입원형 질병통원형 상해입원형 상해통원형
질병보장형 또는 질병형	질병입원형 질병통원형

-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전환후계약으로의 전환을 청약할 때 ‘표준형’, ‘선택형II’ 중 한 가지를 선택 할 수 있다.
- 3) 전환후계약의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보험료납입주기는 전환후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름.
- 4) 전환후계약의 보험가입금액, 공제비율, 보장내용은 전환후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름.

3. 기타

가. 전환후계약은 ‘무배당 새실손의료비보장보험(갱신형)(계약전환용)’의 약관 및 이 특약의 약관 내용을 따름.

나.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전환이 제한되거나 전환이 불가능 할 수 있음.

다. 전환전계약의 “계약전 알릴의무”, “상해보험계약후 알릴의무”,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사기에 의한 계약” 조항은 전환후계약에도 효력이 계속됨.

- 라. 특별조건부인수특약, 특정부위질병부담보특약 및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
인수특약은 전환전계약을 따름.
- 마. 회사는 계약자가 계약전환청약시 전환전계약과 전환후계약의 보장내용 등 중요
한 사항에 대해 비교 설명하고 계약자 확인을 받아야 함.
- 바. 향후 보험업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예 따라 본 사업방법서 및 약관
상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부여되는 장래의 권리(중도부가
특약, 전환 특약 등)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